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2021년 현행화)

1. 법 제9조 제1항 제1호

조문내용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

소관부서/팀	비공개대상정보
전 부서	○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국가기밀(보안업무규정 제24조)
	○ 공판 개정 전의 소송에 관한 서류 (형사소송법 제47조)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통계법 제33조)
	○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획득한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직무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 (발명진흥법 제19조)
	○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내용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 위원회의 심리·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행정심판법 제41조)
	○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에 관한 정보 (환경분쟁조정법 제25조)
	○ 노동위원회의에서 비공개 의결한 노동위원회 회의록 (노동위원회법 제19조)
	○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 내부지침·예규·훈령·지시 등 "비법규 사항"은 제외
감사실	○ 기술자료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라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8조)
감사실, 총무팀, 인사노무팀	○ 산업진흥원 및 부설기관의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5항)
인사노무팀	○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자의 재산등록정보 및 금융거래정보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3항, 제14조 및 제14조의3) * 해당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
정보보호팀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 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국세징수법 제7조의2 제3항)
정보보호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6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7조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업무 - 제47조의3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업무 - 제52조 제3항 제4호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의 평가 업무

소관부서/팀	비공개대상정보
	- 제44조의10에 따른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분쟁조정 업무
정보보호팀, 클라우드산업팀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사업상 비밀(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2. 법 제9조 제1항 제2호

조문내용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소관부서/팀	비공개대상정보
전 부서	○ 대통령·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에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 남북경제협력 사업관련 법적 지원에 대한 의견조회 등에 관한 접수공문, 검토의견서, 민사·상사관련 북한법제 및 중국법제 등 연구에 있어서 선정연구과제 및 연구 관련자료 등
	○ 국가 간의 회의·회담·협약·협정 및 협약의 체결에 관한 계획·전략수립·협상 대책·의제 검토 및 이와 관련된 주요 정보나 지침, 훈령, 지시, 연구보고 등 주요사항
안전환경팀	○ 을지 연습, 직장에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 테러대비 전략, 충무계획,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안전환경팀	○ 위험물의 저장위치
안전환경팀, 정보보호팀	○ 과기정통부 소관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 보호대책, 지정·취소, 취약점 분석평가, 보호지원, 침해사고 및 정보공유·분석센터 관련 정보
정보보호팀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사이버안전(민간) 분야 위기대응 및 통합연습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재난관리에 위협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글로벌사업팀	○ 남북 ICT 협력
VR·AR산업팀	○ 기간통신사업자의 공익성 심사제도의 기본계획 수립 및 공익성 심사에 관한 사항 중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과의 협정 등 국익관련 정보

3. 법 제9조 제1항 제3호

조문내용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소관부서/팀	비공개대상정보
--------	---------

전 부서	○ 공개로 인해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국민에게 오해를 주는 것을 피하기 위해 최종 공표까지 충분한 검토를 요하는 정책, 중간 연구성과 등 ○ 연구 성과 등에 관한 문서
감사실, 사회가치창출팀	○ 위법행위, 부정행위 신고자, 피의자 참고인에 관한 사항
총무팀, 인사노무팀	○ 인감업무·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
인사노무팀, 사업지원팀	○ 수사관계 조회사항
안전환경팀	○ 청사, 건축물 등의 보안 및 경비에 관한 사항
	○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청사, 지하철 역사 등)에 대한 도면
	○ 방재, 방법에 방해가 되는 정보

4. 법 제9조 제1항 제4호

조문내용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

소관부서/팀	비공개대상정보
전 부서	○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
	○ 수사 진행 중에 공개되면 피의자가 알게 되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거나 향후 동일 사안에 대한 수사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
안전환경팀	○ 공개할 경우 청사경비 활동에 대한 정보가 유출되어 범죄예방 본연의 목적 달성에 곤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5. 법 제9조 제1항 제5호

조문내용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

소관부서/팀	비공개대상정보
전 부서	○ 감사·감독·지도·점검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물자 구매, 용역 및 공사 계약에 관한 사항으로서 -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입찰참가신청서, 첨부서류, 유자 격자 명부 등) -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우려가 있는 정보 (입찰예정가 등) - 설계·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설계·시공 상의 노하우, 건축물의 설계도 등)
	○ 각종 정책 및 연구개발 사업 조정 관련하여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심의·조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 해당 평가·심의, 정책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 해당 평가·심의, 정책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연구개발사업 평가 접수 등 기관·사업별 세부평가 집계 내역의사결정이나 내부검토가 진행되고 있어 집행이 개시되지 않은 정책 관련 정보
	○ 완료 전에 공개 시 연구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지식재산권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사업의 발주 또는 개시 전 공개 시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자료
	○ 청구인 등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
	○ 심의회, 위원회 기타 각종 회의관련 자료
	○ 사업자 선정 및 인허가 등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안을 포함한 세부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
감사실	○ 문답서·확인서 등 감사·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감사·조사결과 처분지시서,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예산팀 인사노무팀	○ 자체 조직진단·직무분석 등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인사노무팀	○ 직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성과계약, 근무성적평가, 다면평가, 성과급 순위명부 등의 근무성적평정 사항 중 개인의 성과관리에 관한 정보
인사노무팀	○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공정한 판정·평가업무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 인사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공무원단체 또는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관한 문서
SW시장환경개선팀	○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사업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시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회계팀	○ 입찰 종료 이전에 공개될 경우 입찰 예정자의 경쟁상의 지위 등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입찰 종료 이전에 공개될 경우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입찰과정에서 제출되었으나 공개될 경우 당해업체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 교섭 완료 이전에 공개할 경우 교섭의 난항 등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SW시장환경개선팀	○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사업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시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규제샌드박스팀, SW시장환경개선팀	○ 행정규제에 관한 사항으로 규제개혁 과제 발굴·평가 및 관련 법령 규정 등의 제·개정 사항
규제샌드박스팀	○ 법률 등 개정 이전에 공개될 경우 자유롭고 솔직한 토론, 의견교환 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6. 법 제9조 제1항 제6호

조문 내용	<p>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p> <p>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p> <p>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p> <p>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p> <p>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p> <p>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p>
----------	---

소관부서/팀	비공개대상정보
전 부서	<p>○ 진정·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와 공개만으로도 해당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과 또한 각종 민원처리 자료 중 개인인적사항 등</p> <p>*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 사항,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 제외</p> <p>○ 특정 직원 및 각종 위원회 위원의 자택주소 및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p>

	<p>사회경력·개인휴가(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신청현황·생년월일·계좌번호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p> <p>*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여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제외</p> <p>○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름</p> <p>* 개인이 권리 구제·행사를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 가능</p> <p>○ 개인식별 및 보안(IP, ID 등) 관련 정보</p> <p>○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인허가 신청서</p> <p>○ 증빙서류에 포함된 정보 중 지출 대상자 또는 참석자의 이름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에 규정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p> <p>○ 주민등록번호나 은행 등 금융기관의 계좌번호는 개인의 이름과 결합되어 전자거래 등에 있어 동일인 판단 등에 관한 기본자료로 사용되어 아무런 제한 없이 공개될 경우, 이를 부정사용하면 당해 개인의 사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재산·신용에 대한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증빙인 정보 중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및 은행계좌번호에 관한 정보는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p>
<p>감사실 인사노무팀</p>	<p>○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 운영, 유공자 포상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p> <p>○ 임직원 징계혐의 관련 문서 일체, 비위면직자의 인적사항 및 비위면직사항, 위원회운영 등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정보</p>
<p>인사노무팀</p>	<p>○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취득한 임직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임직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p> <p>*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여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제외</p> <p>○ 시험원서·답안지, 합격자대장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p> <p>○ 이전 근무지 및 담당 직명, 보직 경로에 대한 것(인사발령 기록)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내용이 공개될 경우 궁극적으로 특정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p>

7. 법 제9조 제1항 제7호

<p>조문내용</p>	<p>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2.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	---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소관부서/팀	비공개대상정보
전 부서	○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 기술, 신공법, 시공실적, 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 법인, 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에 관한 정보
	○ 법률자문 관련 내용 및 법무법인(법률사무소)등과의 계약 정보
	○ 지출결의서 등의 법인카드번호
	○ 백서 등을 작성하기 위해 각 기업에서 제출받은 비식별화된 원자료(raw data)로서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8. 법 제9조 제1항 제8호

조문내용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집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소관부서/팀	비공개대상정보
안전환경팀	○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관련 개발계획 등 지정고시 전의 관련 정보